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95호
----------	------

2017. 12. 20.

건명	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주민생활지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7. 11. 17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11. 17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친절행정국 100세 행복과가 신설됨에 따라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에 관한 조항에 이를 반영하고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어 2017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복지위원 규정 삭제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100세 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
(안 제5조제3항)
- 나.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100세 행복과 업무담당주사를
당연직으로 위촉 (안 제7조제3항)

다.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
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
- 복지위원 정의 삭제 (제2조5호)
- 복지위원 삭제 (제10조)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상위법령인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